

제16항. 같음표(〃)

같은 말이나 같은 표현이 겹쳐 나올 때 두번째부터의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쓸수 있다.

례: 제1작업반 50명

제2작업반 〃

제6작업반 〃

[붙임]

때에 따라서는 같음표를 《-〃-》로도 표시할수 있다.

례: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원

남포시 ——〃——